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조례중 개정조례(안)』

《檢討報告書》

전문위원 김찬재입니다.

김영진의원외 한분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(안)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.

-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의 “시장, 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의 세율은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”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.
- 본 조례안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율을 인하하면 그 효과는 주로 중상위층에 돌아가고 세수가 약 165억원이 감소하여 재정에 압박을 주는 등의 부작용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. 부연하면 세수감소액 165억원은 행정자치부에서 탄력세율 적용시 인하된 세액만큼 교부금을 주지 않겠다는 발표에 따라 미교부될 수 있는 13억원의 세입감소액을 포함시킨 것이며, 만약 2005년 중 재재없이 교부금이 수령된다면 순감소액은 표준세율 대비 49억원으로 추정됩니다.
- 과다 인상된 아파트의 경우 납세자의 조세 저항 회피와 인근 구의 인하에 따른 전체 구민의 재산세율 인하 압력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보고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